

##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1.

발의자 : 이학재 · 김현아 · 박명재

신상진 · 신보라 · 문진국

김세연 · 주호영 · 하태경

김관영 · 박덕흠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 ·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,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.

그러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2항 단서 신설).

##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